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성립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배임행위 인정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회사 근무시의 지위, 이 사건 자료들의 다운로드 시점과 반환거부 경위, 퇴사 및 타사 입사지원 경위,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 '향후 하게 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 욕심에 자료들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가 중 휴가지에서의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한 것이어서 그 반출행위 당시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한편, 이 사건 자료들 중 피고인이 일본 F회사로 파견근무를 가있을 당시 일본 F회사 측에게서 제공받아 가지고 온 것들은 원래부터 피해회사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 F회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회사 업무를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원래부터 피해회사의 것이었던 자료들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내역"이라는 서면에 "계열회사 등 관련 회사 및 타연구소와의 제휴에 관한 비밀사항"과 관련하여 'F G5, G6 초기 제품규격 등 정보' 취지로, "계열회사, 협력업체, 협동연구기관 등 관련회사/기관과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과 관련하여 'F 세계회의자료 및 F PET Film 정보' 취지로 각 기재한 것(증거기록 62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선고형 처벌 수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막대한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등을 들여 개발한 기술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상당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

체적으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경쟁사에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활용하여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는 없는 점(이 사건 자료들 중 "K회사."가 L 실장에게 제시된 판시 6건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회사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피고인이 업무용노트북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